

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8. 9. 4.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98. 9. 5
- 다. 상 정 일 자 : 98. 9. 14

(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~2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내무과장 최영욱

나. 개정사유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도소의 명칭 변경
-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본청의 농업 관련 부서와 농촌지도소간 중복 기능을 일원화 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

다. 주요내용

- 제목 및 내용중 농촌지도소를 '농업기술센터'로 지도소를 '센터'로 변경
- 지도소의 분장사무중 '전업농 육성지도 업무'를 삭제하고, 환경 농업에 관한 업무와 농어민 후계자 관련 업무를 신설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농촌지도소를 '농업기술센터'로 명칭을 변경토록 하게된 배경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농촌 지도소의 기능을 기술보급을 중심으로 운영토록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할 것임.
-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중 「농촌 생활개선 업무나 농어민 후계자·농촌지도자 및 농촌 청소년 육성 지도」에 관한 사항은 「전업농 육성」과 같이 농업 행정을 관장하는 농산과로 이관하여 부서간의 특성을 살려 보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.

○ 상위법규관련, 개정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‘생 략’

5. 토론요지

‘생 략’

6. 심사결과

‘수정가결’

○ 제2조 3항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삭제하고, 전업농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, 기술개발과에 축산담당을 신설하여 수정가결.

첨 부 :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

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

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'농촌지도소'를 '농업기술센터'로 한다.

제1조중 '농촌지도소(이하 '지도소'라 한다)'를 '농업기술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'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제3조 및 제4조중 '지도소'를 '센터'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<p>제1조 (설치)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<u>군에 농촌지도소 (이하 '지도소'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제2조 (업무) <u>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</u> <u>2.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지도</u> <u>3. 농촌 생활개선 사업</u> <u>4. 농업 경영개선 지도</u> <u>5. 시설원예, 채소, 과수, 화훼, 약용작물 재배기술지도</u> <u>6.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</u> <u>7. 농민교육 및 지도</u> <u>8.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	<p>제1조 (설치)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 <u>농업기술센터 (이하 '센터'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제2조 (업무) <u>센터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</u> <u>2. 환경농업에 관한 사항</u> <u>3. 전업농 육성에 관한 사항</u> <u>4. 농업경영 개선 지도</u> <u>5. 시설원예, 채소, 과수, 화훼, 약용작물 재배 기술 지도</u> <u>6.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 개발 및 보급</u> <u>7. 농민 교육 지도</u> <u>8.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</u> <u>9. 과학 영농 시설 운영</u> <u>10. 토양 개량 및 시비법 개선 지도</u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(신설)	11. <u>농어민 후계자, 농촌지도사 및 농촌 청소년(4-11)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</u>
(신설)	12. <u>축산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</u>
(신설)	13. <u>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
제3조 (소장) <u>지도소에</u>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	제3조 (소장) <u>센터에</u>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
제4조 (하부조직) <u>지도소의</u>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분장 사무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.	제4조 (하부조직) <u>센터의</u> -